	<b>규정</b>	문서번호	TWP-A505
		제정일자	1996. 05. 14.
	<b>동아리 운영규정</b>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3

## 목 차

- 제1조(목적)
- 제2조(자격 및 범위)
- 제3조(등록요건)
- 제4조(신청절차 및 승인)
- 제5조(등록 시 구비서류)
- 제6조(지도교수)
- 제7조(등록취소)
- 제8조(책임준수)
- 제9조(보칙)
- 별첨
- 부칙

작성부서	<b>학생취업처</b>	제정일자	1996. 05. 14.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기 획 처 장	학 생 취 업 처 장	교 무 처 장	
직 책	담 당				총 장
서 명		/			
일 자					



# 규정

## 동아리 운영규정


문서번호 | TWP-A505

제정일자 | 1996. 05. 14.

개정일자 | 2018. 02. 19.

개정번호 | 3     페이지 | 2/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09. 01. 30.	· 6차 개정
2	2012. 05. 25.	· 학사행정시스템의 전면개편 및 자구수정으로 인한 전면개정
3	2015. 04. 27.	·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
4	2018. 0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li> <li>  기획홍보처 → 기획처, 입학관리센터 → 입학처</li> <li>  학생처/취업지원처 → 학생취업처</li> <li>- 전공주임교수 → 학과장 변경</li> </ul>

	<b>규정</b>	문서번호	TWP-A505
		제정일자	1996. 05. 14.
	<b>동아리 운영규정</b>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5.25>

**제2조(자격 및 범위)**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동아리의 구성회원은 재학생으로 한다.<개정2012.5.25>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생의 동아리 가입은 1인 1개 동아리로 한다.
2. 동아리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학생회원이 4개 전공 이상 20명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전공동아리는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개정2012.5.25>
3. 설립목적과 활동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개정2012.5.25>
4. 동아리는 1명 이상의 교수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2012.5.25>


**제4조(신청절차 및 승인)** 동아리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취업처**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아리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5.25., 2018.02.19.>

**제5조(등록 시 구비서류)** 동아리를 결성하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2012.5.25>

1. 동아리 승인 신청서 1부
2. 가입예정 회원 명단 1부
3. 연간활동 계획서 1부<개정2012.5.25>
4.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 1부<개정2012.5.25>
5. 서약서 1부<개정2012.5.25>
6. 동아리 회칙 1부<개정2012.5.25>

**제6조(지도교수)** ① 동아리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동아리 회원에 의하여 추대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아리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1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공동아리는 예외로 한다.<개정2012.5.25>

② 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2012.5.25>

	<b>규정</b>		문서번호	TWP-A505
			제정일자	1996. 05. 14.
	<b>동아리 운영규정</b>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3

③ 동아리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에는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2.5.25>

**제7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장의 승인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2.5.25>

1. 동아리 결성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회원이 더 이상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2012.5.25>
2. 동아리의 활동이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거나 이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개정2012.5.25>
3. 1년 동안 동아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경우
4. 제8조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학생취업처장**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정2012.5.25., 2018.02.19.>
5. 법령 또는 이 대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2012.5.25>

**제8조(책임준수)** 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이 진다.

- ② 동아리실에서의 전열기 사용, 고성방가와 소음, 음주 및 취침행위, 낙서 등을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12.5.25>
- ③ 수업시간에는 일체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
- ④ 동아리실은 이 대학교의 재학생 이외의 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학생취업처**에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출입자명단을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5.25., 2018.02.19.>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2012.5.25>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b>규정</b>		문서번호	TWP-A505
			제정일자	1996. 05. 14.
	<b>동아리 운영규정</b>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3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 [별지 제1호 서식] 동아리 승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동아리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가입예정 회원 명단
- [별지 제4호 서식] 연간활동 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동아리 회칙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12.5.25>

## 동아리 승인서

결재	담당	계장	처장	총장

동아리명 :

지도교수 :

위 동아리의 결성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이를 승인함.

- 다 음 -

1. 승인기간 :

2. 승인조건 :

첨 부 : 동아리 승인 신청서 외 5건. 끝.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개정2012.5.25>

## 동아리 승인 신청서

동아리명 :

결성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대표자	학 번		전 화 번 호	
	성 명			
회원 예정 수		명 ( 남 :          명, 여 :          명 )		
목 적		<input type="checkbox"/> 일반 동아리		<input type="checkbox"/> 전공동아리
타교 또는 사회 단체와의 관계				
지도교수	소 속		성 명	

이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로서 위의 승인을 받고자 첨부서류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가입예정회원 명부 1부  
 2.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3. 지도교수 승낙서 1부  
 4. 동아리 회칙  
 5. 동아리 서약서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    과    성명    (인)

지도교수 :    과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2012.5.25>

### 가입예정 회원 명단

( ) 동 아 리 ( ) 회

번호	진공	학년	성명	서명	휴대전화	비고

지도교수 : 과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2012.5.25>

## 연간 활동 계획서

( ) 동아리

( ) 회

월 별	주 요 행 사 내 용	행 사 장 소	참 가 인 원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개정2012.5.25>

##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

동아리 명칭				
결성예정년월일				
동아리 목적				
회원예정수				
동아리 대표	학 번		학 과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상기 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이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학 과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개정2012.5.25>

# 서 약 서

본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사고 시에는 회원 스스로가 책임질 것을 전제로 하며, 위규 시에는 스스로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동아리        (        ) 회

회 장        :                                ( 인 )

[별지 제7호 서식]<개정2012.5.25>

## ○ ○ ○ 회 칙

### 제1장 총칙

제1조(회명) 본회는 ○○○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를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동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한다.

제4조(○○○)

제5조(○○○)

### 제2장 기구

제6조(○○○)

제7조(○○○)